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원본(제 2 사본/제 3 사본)

1. 송하인(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		참조번호 한국-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  서식 KV  발행국 _____ (국가)  뒷면 참조			
2. 수하인(수하인의 상호, 주소, 국가)					
3. 운송수단 및 경로(아는 범위까지 기재)		4. 담당자란			
출항일		<input type="checkbox"/>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특혜관세대우			
선명/편명		<input type="checkbox"/> 특혜관세대우 비부여 (사유 기재요)			
양륙항		..... 수입국의 서명권자의 서명			
5. 품목번호	6. 포장의 표시 및 번호	7. 포장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적절한 경우 수량 기재 및 수입국의 상품에 대한 HS 번호 포함)	8. 원산지 기준(뒷면 참조)	9. 총 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 및 가격(RVC 기준이 사용된 경우에만 FOB 기재)	10. 송장 번호 및 일자
11. 수출자 신고			12. 증명		
아래의 서명자는 상기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음			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함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  
(국가)

그리고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의 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  
(수입국)

.....  
장소 및 일자, 서명권자의 서명

.....  
장소 및 일자, 서명 및 증명 기관의 관인

13.비고

## 뒷면 주해

1.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KV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2. 조건: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 상기에 명시된 어떠한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

- 1) 목적지 국가에서 양허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명에 해당된다.
- 2)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의 제 3.8 조(직접운송)에 따라 운송 조건을 준수한다.
- 3)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의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한다.

3. 원산지 기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충족한 원산지 기준을 이 서식의 제 8 란에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서식 제 11 란에 이름이 기재된 수출 당사국의 생산 또는 제조 환경	제 8 란에 기입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WO"
나. 품목별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번변경</li> <li>- 어느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li> <li>- 역내가치포함비율(RVC)</li> <li>- 역내가치포함비율 + 세번변경</li> <li>- 특정 공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TC"</li> <li>- "WO-KV"</li> <li>-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RVC" : 예, "RVC 45 퍼센트"</li> <li>-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결합 규정: 예, "CTH + RVC 40 퍼센트"</li> <li>"특정 공정"</li> </ul>
다. 제 3.5 조를 충족하는 상품	"제 3.5 조"

4. 각 품목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탁송물의 모든 상품은 각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른 크기의 유사한 품목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경우, 특히 관련성이 있다.
5. 상품명: 상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상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6. 본선인도가격(FOB):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제 9 란에 FOB 가격을 반영한다.
7.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는 수입 당사국의 번호를 말한다.
8. 수출자: 제 11 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
9. 담당자 기재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특혜관세대우의 부여 여부를 제 4 란의 해당 상자에 (√) 표시한다.
10. 제 13 란의 비교:
  - 1) 송장이 비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되는 경우, “비당사국 송장”이라고 기록되어야 할 것이고 송장을 발급하는 회사의 이름과 국가 같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 2) 필요시 그 밖의 비교사항들이 기록된다.

원본(제 2 사본/제 3 사본)  
(추가면)

참조번호

5. 품목 번호	6. 포장의 표시 및 번호	7. 포장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적절한 경우 수량 기재 및 수입국의 상품에 대한 HS 번호 포함)	8. 원산지 기준 (뒷면 참조)	9. 총 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 및 가격 (RVC 기준이 사용된 때에만 FOB 기재)	10. 송장 번호 및 일자
<p>11. 수출자 신고</p> <p>아래의 서명자는 상기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p> <p>..... (국가)</p> <p>그리고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의 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p> <p>..... (수입국)</p> <p>..... 장소 및 일자, 서명권자의 서명</p>		<p>12. 증명</p> <p>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함</p> <p>..... 장소 및 일자, 서명 및 증명기관의 관인</p>			